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68 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황정아·이기헌·이재관

신정훈 · 조계원 · 임광현

허성무 • 박용갑 • 조승래

한민수 · 맹성규 · 채현일

박정현 · 장종태 · 이병진

홍기원 • 박지원 • 민형배

박희승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%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,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음.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, 가해자 검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제공 받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음.

이외에도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관

련 정보의 범죄피해자 제공과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(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).

법률 제 호

#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, 공판진행 사항, 형 집행 상황 및 보호관찰·잠정조치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) ①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· 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·검사·법원의 처분 내용,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·형집행정지·형기만료나 보안 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(身柄)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(범죄피해자에 대한 정 세8조의2(범죄피해자에 대한 정 보 제공 등) ① -----보 제공 등)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. 가해자에 대한 수사 관련 사 항. 공판진행 사항. 형 집행 상황 및 보호관찰・잠정조치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에 관한 정보 3. (생략)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8조의3(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 요 변동 상황 통지) ① 범죄피 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 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・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·검 사 · 법원의 처분 내용, 재판선

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 방・형집행정지・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 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(身 柄)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 죄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판 및 신병 에 관련된 변동 상황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